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978호
2. 발 의 자 : 신복자 의원(찬성자 31명)
3. 발의일자 : 2025년 08월 11일
4. 회부일자 : 2025년 08월 14일

II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약칭: 전통시장법)에 따르면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상인연합회의 지회인 서울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,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최근 「전통시장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
Ⅳ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서울시의 지도·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상인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됨.

2. 서울특별시장인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)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서울시의 지도·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4조(지원사업) (생략) <신설>	제4조(지원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인연합회(이하 “서울상인연합회”라 한다)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서울상인연합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하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서울상인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당초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) 제66조는

지방자치단체의 상인연합회 사업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, 올해 5월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및 상인연합회 지회의 사업비, 운영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(시행 2025. 11. 28.)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.

< 전통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>

제66조(상인연합회) ① ~ ④ (생략)

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(支會)를 둘 수 있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⑧ ~ ⑬ (생략)

- 상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정단체로서, 서울 상인연합회는 서울시에 소재한 160개 전통시장¹⁾을 회원으로 둔 상인연합회의 서울지회에 해당함.
- 다만 전통시장법은 상인연합회와 서울지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모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 개정조례안에서 서울지회(서울상인연합회)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된 것은 서울시 관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 관리·운영 범위에 맞춰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.
- 또한 유사한 성격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²⁾을 고려할 때,

1) 서울상인연합회 홈페이지 참고

2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5(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회의

법정단체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동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보고의무, 자료 제출 요구 등 서울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·감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부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지도·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상인연합회의 운영, 사업 수행, 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됨.

입법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